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86
----------	-------

발의연월일 : 2026. 1. 12.

발 의 자 : 김미애 · 김기현 · 박정훈
이철규 · 김정재 · 송석준
나경원 · 김석기 · 김위상
조정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이용자의 접속 국가별 비율 표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이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간,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2(정보 조작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조치의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 동일한 접속 환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대량으로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
 2.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조치의무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 이행실적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4조의11(이용자의 접속 국가별 비율 표시 등) 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게시판 등에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이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간,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44조의12(정보 조작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조</u>

치의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 동일한 접속 환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대량으로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

2.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조치의무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 이행실적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